

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

*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, 시행규칙 제44조, 45조, 고시-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
■ 지원요건

- 취업지원 프로그램(붙임 참조)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(실업자)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**6개월 단위**로 지원
(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(단, 중증장애인·여성 가장·도사지역거주자는 구직등록후 실업기간 1개월 초과 시 가능)
(워크넷(<http://www.work.go.kr/>) → 인재정보 → 취업희망풀)
※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취업지원 프로그램)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
- 구직자의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내에 채용 시 장려금 대상이 됨

■ 지원 제외 대상

1. 지원 제외 근로자

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
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**115만원** 미만 근로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을 고용한 경우
-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제외)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

2. 지원 제외 사업주

- 국가공공기관·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,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
-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이직 전 1년 이내 근무이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이직 당시 관련 사업주(인수, 합병 등)에게 고용된 경우
- 사업주가 지원대상자 **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** 사업장 소속 근로자(본사, 지사 포함)를 해고나 권고사직 시킨 경우(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)
-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신청기간(**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**)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

■ 지원수준

- 1년에 720만원 지원(대규모기업 360만원)

- *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(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, 일할·일할 단위는 지급하지 않음)

■ 지원기간

- 1년 (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2년)

■ 지원한도

-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(소수점 이하 절사)

■ 지원절차

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(구직자) → 구직등록(구직자) →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 유지 (사업주) →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 (고용센터)

- ※ 유의사항 : 먼저 채용하거나 면접을 본 근로자를 사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채용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됨.(부정수급 처분: 장려금 반환, 2~5배 추가징수, 지급제한기간 설정, 형사처벌 등)

■ 제출서류

-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【별지 제17호 서식】
- ② 근로계약서, 신청기간동안의 급여대장·급여이체증
- ③ 기타 지원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함)
 - 중증장애인: 장애인등록카드, 장애증명서
 - 여성가장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- 한부모가족증명서

■ 신청방법

-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, *우편 접수 가능

(*주소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(구미동 23-3)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기업지원팀 (우)13627)

< 유의사항 >

**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·지급받은 자는 반환, 추가징수(최고 5배), 지급제한기간 설정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.
2.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,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참여 신청(사업계획서) 및 지원금 지급 신청, 그 외 다른 지원금 신청 등은 하나의 사업 단위(법인)로 판단하며, 신청은 본사(본점)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한다.
3. 사업장의 독립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p>1.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Ⅰ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.</p> <p>(2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Ⅰ 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.</p>
<p>2.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‘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’(2개월 이상 과정)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</p>
<p>3.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‘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’을 마친 사람</p>
<p>4.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‘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’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(2) ‘기술교육원 직업훈련’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</p>
<p>5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‘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. 단,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6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‘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p>
<p>7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‘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’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8.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‘취업워크숍’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(2) ‘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)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p>
<p>9.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‘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’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. 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10.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‘일반고 특화과정’을 수료한 사람</p>
<p>11. 지방관서별로 「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」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후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</p>
<p>12.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‘청년도전 지원사업’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</p>